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01179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011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나571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 11 선고 2012가단105253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안산시

피고, 피상고인 건□□□조합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나5715 판결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금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등 참조).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수급인이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에 선급금의 충당대상이 되는 기성 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약정에 따라 선급금 반환에 관한 건□□□조합의 보증책임의 범위가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선급금의 충당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정산관계에 있어서는 각

미정산 선급금반환채권 및 기성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상호 대립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은 예외적 정산 약정의 존재를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69713 판결 참조).

또한 약관의 규정이나 보증 및 보험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건□□□조합에 의한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책임의 유무 및 범위는 계약 체결 당시의 도급계약상의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도급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선급금 총당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함으로써 건□□□조합의 보증책임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00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당시 미정산된 이 사건 선급금은 기성공사대금에 당연히 총당되어 세▽△▼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건설'이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위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피고의 보증책임 또한 함께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경♡개발 주식회사(이하 '경♡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직접 지급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이 사건 선급금의 총당 대상이 되는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보증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원고, 세▽△▼건설, 경♡개발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직불합의는 선급금의 총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예외적 정산약정인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제2절 5. 나. 4)호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2-가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직불합의는 원고와 세▽△▼건설, 경♡개발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을 뿐 이러한 합의로 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외적 정산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원고가 경♡개발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 98,26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는 경♡개발이지 세▽△▼건설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설령 세▽△▼건설을 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보증계약은 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보증대상으로 담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 선급 보증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